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2003.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2005. 7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2014. 12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을 위한 협의체 명칭 및 기능 등의 변화가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제정에 따른 조례 명칭 개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
- 기 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 12월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조례 제명을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서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2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 안 제4조에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2014. 12월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구심점이 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